

과세 기간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간접 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

(단위 : 원, %)

① 연 번	소득지급자		간접 투자회사등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② 상 호	③ 사 업자 등 록 번 호	④ 투 자 회 사 명 또 는 투 자 신 탁 명	⑤ 간 접 투 자 외 국 법 인 세 액	⑥ 외 국 원 천 징 수 세 율	⑦ 국 내 원 천 징 수 세 율	⑧ 공 제 율	⑨ 조 정 간 접 투 자 외 국 법 인 세 액 (⑤×⑧)
1								
2								
3								
4								
5								
6								
7								
8								
9								
합 계								

2.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단위 : 원)

⑩ 소 득 구 분	⑪ 기 준 소 득	⑫ 조 정 계 수	⑬ 조 정 간 접 투 자 외 국 법 인 세 액 합 계	⑭ 당 기 실 제 세 액 공 제 액 (⑫×⑬)
합 계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들(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함)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을 대신하여 소득의 종류[연금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를 적습니다.
4. 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들이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당기차감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당기차감분 중 당기발생분과 전기이월분은 행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 ⑥ 외국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⑦ 국내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은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7. ⑧ 공제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0.55를 적습니다.
8. ⑩ 소득구분란: 지급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연금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9. ⑪ 기준소득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외국납부법인세액, 연금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text{기준소득} = \text{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text{천만원} - [\text{연금소득} - \text{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text{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text{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금액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매입자금}]$$
10. ⑫ 조정계수란: 연금소득의 경우 단일 조정계수인 0.89를 적으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조정계수표

기준소득	이자소득 조정계수	배당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0.9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73	0.88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53	0.7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6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0.67
10억원 초과	0.36	0.64

11. ⑬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합계란: ⑩ 소득구분에 기재한 소득의 종류에 대응되는 ⑨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